2024년 정간사 본부 연석 회의록 [12월]

일 시		12월 14일(:00 -13:00	(토)	7	당 소		대전	역 애트3	
참석자	<정간사> 김기 신인 / <본부 국장 및	후,이 위거류	n'			ग् रेट देशी	발세설 ^{게사조숙형} 경, 임호		5 5 의남왕시?
	1. 2025년 (계산안 심의	(제안자 :	박진경	재정팀장)			
	가. 2025년 예상 수입 450,000,000원 (2024년 413,090,000원) - 템북 후원금 중단 예정 - 개인 후원금은 소폭 늘었으나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 - 인건비와 물가, 환율 상승으로 2025년에도 재정적 어려움 예상됨 나. 어려운 재정 마련 방안 - <표1> 월급 호봉이 오르고 있음에도 개인후원금의 비율이 제대로 오르지 않음 - 개인 후원 독려 (예: 1만원 증액후원운동) 필요, 수련회와 지역 별무리 시간을 이를 안내								
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	오르고	증액후원					
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약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반내	오르고 예: 1만원 후원 금	증액후원 - - - - - - -	년운동) 필 <표 1> 연황보고	요, 수련 (11월기준	회와 지역 569명)	별무리 시	간을 통하
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역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반내 반원이하(70%)	오르고 예: 1만원 후원 급	증액후원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년운동) 필 〈표 1〉 년황보고 단원이하(18	요, 수련 (11월기준 3%)	회와 지역 569명) 12 ^년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	간을 통 ⁶
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역 5년 후원금액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간내 만원이하(70%) 인원(명) 비	오르고 예: 1만원 후원: ^章	증액후원 금 액별 호 12만 5원금액 (년운동) 필 〈표 1〉 년황보고 단원이하(18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	별무리 시	간을 통 ⁶ (%) 비율(%)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역 55 후원금액 5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안내 만원이하(70%) 인원(명) 비	오르고 예: 1만원 후원 급	증액후원 금액별 현 12만 5원금액 (1 60,000)	년운동) 필 〈표 1〉 년황보고 단원이하(18	요, 수련 (11월기준 3%)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 130,0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	간을 통 [®] (%) 비율(%)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역 5년 후원금액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간내 만원이하(70%) 인원(명) 비 1	오르고 예: 1만원 후원금 ^{율(%)} 후	증액후원 금 액별 호 12만 5원금액 (년운동) 필 〈표 1〉 선황보고 난원이하(18 인원(명)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	간을 통 ⁶ (%) 비율(%) 0%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약 55 후원금액 5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간내 만원(명) 비 1 94	우원- 하 후원- 하 후 (%) 후 17%	증액후원 12만 원금액 (60,000 70,000	년운동) 필 〈표 1> 년황보고 단원이하(18 인원(명)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 1%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 130,000 150,0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 2	간을 통 ⁶ %) 비율(%) 0%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약 5년 후원금액 5,000 10,000 20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안내 안원(명) 비 1 94 56	우원 : 1만원 후원 : 1만원	증액후원 12만 5원금액 (60,000 70,000 80,000	년운동) 필 〈표 1> 년황보고 단원이하(18 인원(명)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 1%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 130,000 150,0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 2	간을 통 ² 가을 통 ² 이연 이연 19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약 55명 후원금액 5,000 10,000 20,000 25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간내 만원(명) 비 1 94 56 1	우원급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	증액후원 12만 5원금액 (60,000 70,000 80,000 90,000	년운동) 필 (표 1> 년황보고 한원이하(18 인원(명) 1 5 2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 0% 0%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 130,000 150,000 180,0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 2	간을 통한 기 등 (%) 기 등 (%) 기 등 (%)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약 5년 후원금액 5,000 10,000 20,000 25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가내 만원이하(70%) 인원(명) 비 1 94 56 1 147	우리고 예: 1만원 후원: ^{후원:} 10% 10% 0% 26%	증액후원 12만 원금액 (60,000 70,000 80,000 90,000	년운동) 필 〈표 1〉 년황보고 단원이하(18 인원(명) 1 5 2 1 80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 0% 0% 14%	회와 지역 569명) 12 ¹ 후원금액 130,000 150,000 180,000 198,5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 2 32 2 7	간을 통 ² (%) 비율(%) (9) (9) (9) (9) (9) (9) (9) (9) (9) (9
결정사항	나. 어려운 - <표1> - 개인 - 이를 역 55 후원금액 5,000 10,000 20,000 25,000 30,000 40,000	월급 호봉이 후원 독려 (여 가내 만원이하(70%) 인원(명) 비 1 94 56 1 147	우리고 예: 1만원 후원: 3 8(%) 후 0% 10% 0% 26% 1%	증액후원 12만 환원금액 (60,000 70,000 80,000 90,000 1100,000	년운동) 필 (표 1> 년 황보고 단원이하(18 인원(명) 1 5 2 1 80 3	요, 수련 (11월기준 3%) 비율(%) 0% 0% 14% 1%	회와 지역 569명) 12년 후원금액 130,000 150,000 180,000 198,500 200,000	별무리 시 만원이상(12 인원(명) 2 32 2 7	간을 통해 가능 등 등 하

2. 2025년 인사안 심의 (제안자: 김만호 대표간사)

- 결정 : 그대로 임명하기로 함.

<붙임 2: 2025년 신임 사역자 명단>

1.수련회 준비 상황 안내 (제안자 : 황운기)

- 가. 남성 GBS리더가 부족한 상황, 권역별로 필요 인원 할당 예정
- 나. 저녁기도회, 대표기도는 사역을 내려놓는 간사님께 먼저 의뢰

2. 내규 및 연혁 등 수정 의견 수렴 (제안자 : 박세철)

- 가. 교사선교회 정관과 내규를 전체적으로 살피며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신속하게,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함. 따라서 추후 따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.
- 나. 연혁에 2025년 신임 대표간사 추가 기재
- 다. 내규 수정 안 중 '회원가입 방법 안내'에 지역(캠퍼스) 간사 추천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별무리 참여 정도, 이단 여부 등 면밀히 살핀 후에 회원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
- 라. 내규 수정 안 중 '파송원칙'에서 2항, 6항의 의미는 단순한 별무리 회원이 아닌 그 의무까지 다하는 회원이 파송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, 그렇지 않으면 선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나 여러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.

<붙임 3: 교사선교회 규정-파란 글씨가 개정안>

기타 안건

〈붙임 1: 2025 교사선교회 예산 요약서〉

< 2025 교사선교회 예산 요약서 >

1. 수입 예산 (단위: 원)

수 입								
계정코드	계정과목	적요	금액	특기 사항				
4200000	후원금	개인후원금	450,000,000원	월: 37,500,000원*12개월				
	합 계		450,000,00원	-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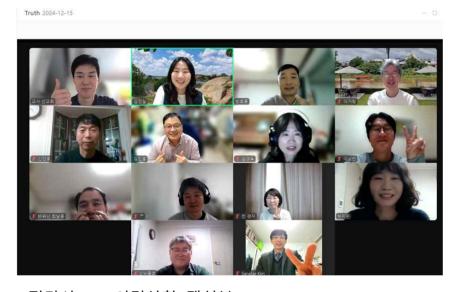
2. 지출 예산 (단위: 원)

	그 기술 에인 (단위·편)								
지출									
과	목	적요	2024 예산	2025 예산	전년대비 증감률(%)	월 예산	특기사항		
	모	지 역 사역비	79,800,000	83,200,000	4.3	6,930,000	38개 지역(19 %)		
		캠퍼스 사역비	45,480,000	46,560,000	2.4	3,880,000	10개 캠퍼스		
	임	총 액(A)	125,280,000	129,760,000	3.6		전체 재정의 (28.83)%		
		해외 선교사	66,348,000	77,160,000	16.3	환율: 1,407.5	이보이스: 월 2,216,000(90%+개인후원) 1750\$ 퇴직금을 위한 적금(9년) 월50만원 홍세기: 월 1,477,000(60%) 1750\$ 예미희: 월 548,000(30%) 1300\$ 구재범: 월 1,689,000(50%) 2400\$		
사	지		0	3,600,000	100.0	300,000	해외협력선교사 1가정		
^r	원	필리핀선교센터	3,600,000	3,600,000	0.0	300,000	필리핀 선교센터 운영 지원비		
	[편	대표 간사	6,000,000	6,000,000	0.0	500,000	대표 간사		
١؞؞		사무 간사	13,200,000	14,400,000	9.1	1,200,000	사무간사 (급여+4대보험+퇴직적립)		
역		대외 협력	1,200,000	1,200,000	0.0	100,000	좋은교사운동		
		좋은교사 파견	27,600,000	28,200,000	2.2	2,350,000	비전연구소장 (월 235만원*12개월)		
١		총 액(B)	90,348,000	134,160,000	48.5		전체 재정의 (29.81)%		
U	=	특별 지원1(운영)	69,000,000	77,000,000	11.6	-	수 현 회 : 년 24,000,000 디모데 캠프: 년 20,000,000 토요학교 : 년 15,000,000 센터관리 : 년 10,000,000 선교사항공료: 년 8,000,000		
	별	 특별 지원2(임대)	1,200,000	0			교원대훈련관 종료		
		독교 시전4(8대 <i>)</i> 	1,800,000	1,800,000	0.0	150,000원	대구교대 훈련관 지원 (월15만원)		
		예비비	7,932,000	8,640,000	8.9				
		총 액(C)	79,932,000	87,440,000	9.4		전체 재정의 (19.49)%		
		기획팀	9,000,000	7,000,000	-22.2	_	체육대회		
		사 재정팀	11,740,000	10,540,000	-10.2	_			
		무 미디어 팀	1,300,000	1,300,000	0.0	_			
		국 문서사역팀	4,500,000	6,500,000	44.4	-	기독교사대회 홍보 및 선교회 팜플렛 제작비		
		북돋움팀		7,000,000	100.0		차기사역자 북돋움		
본	국	총 액(D)	101,972,000	32,340,000	-68.3		전체 재정의 (7.18)%		
_	별	교 사 국	11,800,000	12,300,000	4.2	-			
	사	제 자 국	4,500,000	3,000,000	-33.3	-			
부		예비교사국	9,000,000	10,000,000	11.1	-			
'	멱	교육국	2,000,000	2,000,000	0.0	-			
		해외선교국	10,000,000	11,000,000	10.0	-			
		TEM연구소	6,000,000	6,500,000	8.3	-			
		정 간 사 회	8,000,000	10,500,000	31.3	-			
		총 액(E)	139,272,000	55,300,000	23.7		전체 재정의 (12.29)%		
자	· 산	적 금	31,000,000	11,000,000	-64.5		*적금1: 목적사업적립 (24년 3100만원+5백) *적금2: 북한선교(월50만원) 24.11.30 850만원		
		총 액(F)	31,000,000	11,000,000	-64.5		전체 재정의 (2.4) %		
총	액(A+B+C+D+E+F)	432,000,000	450,000,000	4.2				

〈붙임 2: 2025 신임사역자 명단〉

	구분	2024년 사역자	2025년 사역자	비고		
본부	교육국장	김재현	조숙형			
제자국장		김은경	홍주영			
	서울강동	•	이주헌			
TICH	서울동북	김잔디	정단희			
지역	부천	김진실	장은희			
부산서부		서은경	서동민			
캠퍼스 한국교원대		황유진	전누리			
				2024.12.15.		
	정간사		백지은	줌 인터뷰 후 신임정간사로		
				임명하기로 함.		
		-		2024.12.16.		
캠퍼스	서울교대	황지혜	송영권	추가 변경안이 정간사 SNS를 통해		
				결정		

<정간사 줌인터뷰- 백지은 후보/ 2024.12.15.>



<정간사 SNS의결상황 캡쳐본/ 2024.12.16.>



인사원칙

2025년 1월 22일 개정

1. 회원

1) 가입

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지역(캠퍼스) 간사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, 총회에서 입회를 승인한다.

2) 권리와 의무

회원은 헌금에 동참할 의무 및 기타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회원은 실 수령액의 5% 또는 구좌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.

3) 탈퇴

회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 단 탈퇴 시에는 본부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.

4) 제명

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, 본 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간사회 의결을 거쳐 본 회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.

2. 정간사(정간사회)

※ 정간사(정간사회)는 선교회 내부 명칭이며, 대외적 명칭은 이사(이사회)로 한다.

- 1) 역할
 - 중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한다.
 -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세워 나간다.
 - 본 회의 대표 및 본부간사, 책임간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.
 -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
 - '사단법인 교사선교회 규정집'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2) 구성

회원 수의 5% 이내로 구성한다. 단, 회원의 수는 헌금 동참자의 수를 근거로 산정한다.

- 3) 선임 자격 :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.
 - 양육에 있어 3대의 열매를 경험한 자
 - 본회의 주 사역(본부 각 국 사역, 지역, 캠퍼스)을 책임간사 및 협동간사(팀장)로 7년 이상 섬긴 경험이 있는 자
 - 무장과정을 통과한 자
 -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자
 - 본회에서 영적, 사회적으로 덕망이 두텁다고 인정되는 자
- 4) 임기

정간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(단,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임 가능하며, 정년은 만 62세이다.).

5) 휴무

해외 이주, 건강 이상 또는 정간사회에서 인정된 사유 발생 시 휴무정간사로 전환되며, 휴무 사유가 종료될 경우, 정간사의 직무를 재개한다.

6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본 회 정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, 정 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.

7) 사임

임기 종료 이전에, 본 회의 정간사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,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.

3. 등기 이사

- 1) 역할
 - 사단법인 교사선교회 법인관련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 - 별무리 학교 이사의 역할을 감당한다.
- 2) 구성

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.

3) 선임 자격

정간사 및 퇴임한 정간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4) 임기

정년의 한계를 두지 않으나, 70세 이후에는 건강 여부를 고려한다.

5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본 회 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, 정간 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,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4. 대표

- 1) 역할
 - 대외 관계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.
 - 정간사회 결의에 따라 본부 간사 및 책임 간사를 임명한다.
 - 예산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.
 - 본회의 모든 사역을 조정하고 총괄한다.
 - 정간사회 안건을 기안하고 정간사회를 진행한다.
- 2) 선임 자격 :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.
 - 본 회의 정간사로 섬기고 있는 자.
 -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자.
 - 본회에서 영적, 인격적, 사회적으로 덕망이 두텁다고 인정되는 자.
- 3) 임기

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,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(최대 6년까지).

4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본 회 대표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, 정간 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.

5. 본부 간사

- 1) 역할
 - 각 국 사역을 총괄한다.
 - 대표를 도와 지역 및 캠퍼스, 디모데, 본부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필요에 따라 팀장을 선임하여 동역할 수 있다. (팀장 선임 자격 : 훈련 과정 이상 수료자)
 - 국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- 2) 선임 자격 :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.
 - 훈련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
- 국별, 팀별 사역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3) 임기

임기는 4년이며,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4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본부 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, 정 간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.

6. 지역 간사

- 1) 역할
 - 지역의 책임 사역자로서 지역 사역을 총괄 한다.
 - 지역 형편에 맞게 임원단 및 협동간사를 세워서 동역할 수 있다. (협동간사 선임 자격 : 훈련과정 이상 수료자)
 - 지역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한다.
 -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본부 사무국(재정팀)에 보고 한다.
- 2) 선임 자격
 -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
 - 본 회의 가치와 사명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
 -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(특별한 경우, 정간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)
 - 지역공동체에서 영적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
- 3) 임기

임기는 3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4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지역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시, 정간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.

7. 캠퍼스 간사

- 1) 역할
 - 캠퍼스의 책임사역자로 캠퍼스 사역을 총괄한다.
 - 캠퍼스 형편에 맞게 임원단 및 협동간사를 세워 동역할 수 있다. (협동간사 선임 자격 : 훈련과정이상 수료자)
 - 캠퍼스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한다.
 -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본부 사무국(재정팀)에 보고한다.

2) 선임 자격

-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
- 양육에 있어 3대의 열매를 경험한 자(특별한 경우, 정간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)
- 본 회의 가치와 사명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
- 훈련과정과 캠퍼스 간사징모과정을 수료한 자
- 지역공동체에서 영적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
- 3) 임기

임기는 3년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4) 해임

본인의 의사 및 지역간사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시, 정간사회 만 장일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.

재정원칙

2025년 1월 22일 개정

1. 방침

- 1)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선교회 회원이 헌금하여 재정을 운영한다.
- 2)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사선교회 존립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한다.
- 3) 정간사회는 재정운영원칙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 및 결산을 심의·의결한다.
- 4)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의 주체는 본부 및 각 지역·캠퍼스 간사이며,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.
- 5) 회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수입

- 1) 헌금자는 교사선교회 회원인 교사, 예비교사, 제자 그리고 기타 후원자들이다.
- 2) 회원들에게는 5% 헌금 또는 구좌제로 약정하여 헌금한다.
- 3) 모든 헌금은 선교회 전체 계좌로 입금하며, 재정팀장은 매월 헌금자의 명단과 각 지역의 헌금 총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- 4) 예비교사 및 제자들의 헌금은 각 캠퍼스와 제자들 모임에서 관리하되, 헌금자 명단과 총액을 홈페이지 캠퍼스 및 제자 모임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.

3. 지출

- 1) 지역 사역비는 전체 재정의 25% 내외로 지출한다(단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).
- 2) 캠퍼스, 본부 사역비는 심의·의결된 예산안에 근거해 지출한다.

- 3)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(장학금 및 지원금 등)은 정간사회의 결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.
- 4) 지역 및 캠퍼스 재정 담당자는 회기 마지막 달인 2월 28일까지 결산내용을 본부 사무국 재정팀장에게 제출하다.
- 5) 선교회 각 기관에서는 사역활동 중 원거리 이동으로 교통비가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.
 - 각종 회의(정간사회의, 국장회의, 국별회의, 권역별회의, 지역회의 등) 교통비는 회의 주 관 기관에서 지출한다.
 - 간사리트릿(대면) 교통비는 간사가 소속된 지역 별무리에서 지출한다.
 - 타지역 방문 사역(설교, 강의, 봉사) 교통비는 요청지역 또는 소속 기관(국, 팀, 지역)에서 지출하다.
 - 교사국에서는 양육특별지원비 신청을 받아 원거리 양육사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급한다.
 - 교통비 지원 금액은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기관(국,팀,지역)에서 정한 지출 방침 기준에 따라 지원하다.

4. 지역

각 지역에서는 지역 재정사용원칙을 정하여 운영하되 다음을 참고한다.

- 전체 모임 운영비: 장소사용료, 식비, 자료비, 강사료(어린이 보육교사 임금)
- 행사비: 작은 별 잔치, 지역교사 초청 잔치(양육사례발표 등)
- 기자재 구입비(빔프로젝터 등)
- 양육교재구입비
- 디모데 및 제자 관리비
- 제자 및 예비교사 장학금(등록금의 50%)
- 지역특색 사업을 위한 적립 등

5. 캠퍼스

- 1) 캠퍼스 사역비는 본부에서 지원한다.
- 2) 각 캠퍼스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관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은 본부 사무국(재정팀)에서 관리하며 운영상황 및 신설,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교사국장이 관리한다.
- 3)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, 전세금은 본부 사무국(재정팀)으로 즉시 반환한다.

6. 기타

- 1) 회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 모금은 정간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.
- 2) 위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재정 관련 사항은 정간사회의 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.
- 3)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간사회의의 결정을 통해 집행한다.

파송원칙

2025년 1월 22일 개정

1. 파송에 대한 결정

- 1) 파송은 장기선교사(교육선교사, 선교사), 단기선교사, 전임사역자로 구분한다.
- 2) 파송선교시는 교사선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(양육, 별무리 참석, 회비 등)를 다하는 사람으로 무장과정 이상의 양육과정과 교사선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을 마쳐야 한다.
- 3) 파송선교시는 선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, 출국 시 신변안전과 관련된 서약서를 본부 해외선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파송은 정간사회에서 결정한다.
- 5) 파송선교사는 교사선교회 내외에서 후원자를 확보하여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확보한다.
- 6) 교사선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훈련과정 이상의 양육과정과 교사선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 훈련을 마치거나,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협력선교사를 세울 수 있다.

2. 선교 후원금에 대한 이해와 사용지침

- 1) 선교후원금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다.
- 2) 필요한 재정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는다.
- 3)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한다.
- 4) 파송선교사는 선교지의 실정에 맞게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인다.
- 5) 파송선교시는 물질 사용에 있어 선한 청지기로서의 분별력과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.

3. 선교 후원금 모금

- 1) 파송선교사와 선교사역의 필요에 따라 재정적 후원을 진행한다.
- 2) 선교지에서 필요한 재정은 교사선교회 후원금과 개인후원금을 통해 확보한다.
- 3) 파송 선교사는 선교회 회원 및 지인, 교회로부터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.
- 4) 파송선교사가 소속된 지역과 개인후원자들은 약정한 선교기간 동안 재정 및 기도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
4. 선교사 지원 기준액

1) 각 지역 후원 기준액

(단위: 미국 달러)

구 분	1지역 (중국, 터키)		2 저 (파푸아뉴기	 역 니, 필리핀)	3지역 (한국, 미국, 독일)		
	기준액	실지급액(50%)	기준액	실지급액(50%)	기준액	실지급액(50%)	
독신	1100	<u>550</u>	<u>1300</u>	<u>650</u>	<u>1500</u>	<u>750</u>	
가정(부부)	1500	750	1750	875	1950	975	
가정(자녀1)	1750	875	1950	975	2150	1,075	
가정(자녀2)	1950	975	2150	1,075	2400	1,200	
가정(자녀3 이상)	2200	1,100	2400	1,200	2600	1,300	

* 지역 구분은 국가 별로 구분하지 않는다. 동일 국가 내에서도 주변 환경과 물가 등 선교지 현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.

- 2) 선교사 지원 기준액은 교사선교회에서 회기년도 시작 달(1월) 기준 달러 환율에 근거하여 원화로 지원한다.
- 3) 선교사 구분에 따른 교사선교회 지원 비율 이외 후원금은 개인후원자와 교회 등의 후원을 통해 모금하도록 한다.
 - 단기선교사는 선교사 지원 기준액의 50%를 교사선교회에서 지원하며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. 단 채용으로 인한 급여 수령 시 기준액의 40% 이내에서 지원하며,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시 30%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장기선교사는 선교사 지원 기준액의 90%를 교사선교회에서 지원하며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. 단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시 60%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협력선교사는 매월 30만원(개인, 가정 동일)을 지원할 수 있다.
- 4) 선교사 자녀 지원 기준은 만25세 이하의 학업 중인 자녀로 한다.

5. 장기 선교사 관리

- 1) 자격
 - 장기선교사(5년 이상) 파송은 무장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,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.
 -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선교사 관리 원칙에 동의하는 자에 한한다.
- 2) 방침
 - 교사선교회와 후원관리자들에게 연말에 재정보고를 포함한 사역보고를 한다.
 - 장기선교사는 안식년 및 사역종료 후를 대비한다. 선교후원금 중 초과 모금액은 적립하는 것을 지향한다.
 - 기도후원자 및 재정후원자 관리를 위한 모든 행정비용은 모금액에서 지출한다.
 - 장기선교사는 선교회 회원 외에 교회 및 기타후원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다.
 - 교사선교회는 선교사의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장기선교사 후원은 후원 기준액의 90%이며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 - 장기선교사의 은퇴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한다.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협력 선교사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.
 - 선교회는 장기선교사를 케어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은퇴 준비를 돕는다.

6. 단기 선교사 관리

- 1) 자격
 - 무장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,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자
 - 타문화를 이해하고 교육선교에 관심을 갖는 자
 - 재정 및 기도후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
 - 교직을 정지하고 단기간의 교사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
 -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선교사 관리원칙에 동의하는 자
- 2) 방침
 - 교사선교회와 개인후원자들에게 연말에 재정보고를 포함한 사역보고를 한다.
 - 기타 내용은 본부 결정에 따른다.

7. 선교비 사용

- 1) 선교사는 본인 명의 통장을 하나만 개설한다.
- 2) 출국 전에 후원관리자에게 도장과 개설한 통장, 현금카드를 제출하고 이를 본부 해외선교 국장에게 보고한다.
- 3)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여 개인 구좌를 개설하고 이를 본부 사무국 재정팀장과 후원관리 자에게 공지하다.
- 4) 후원관리자는 매월 정한 일자에 맞추어 선교비를 송금한다.
- 5) 선교비는 선교사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.
- 6) 사역과 직결된 장비구입이나 특별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내 개인구좌 비축금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단 해외선교국장과 개인후원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전 동의를 거친 사항이어야 한다.

8. 단기 선교팀 관리

- 1) 자격: 교사는 확립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, 예비교사는 PLTC를 수료한 자.
- 2) 방침
 - 단기 선교팀 사역은 기획단계에서 해외선교국장 및 대표간사와 협의하여 진행여부(날짜, 인원, 나라 등)를 결정한다.
 - 한글학교, MK CAMP, 홈스쿨링, 현지 교사 교육, 가정교육 세미나, 캠퍼스 이웃리치 등 교사선교회와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.

9. 전임 사역자 관리

- 1) 자격
 - 훈련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그에 준한다고 정간사회에서 인정한 자
 - 교사선교회의 비전성취를 위해 전임사역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
 - 교직을 정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임사역에 헌신한 자
 - 교사선교회의 비전과 국내 사역자 관리 원칙에 동의하는 자
- 2) 방침

교직에 재직 중인 국내 사역자의 전임사역은 3년 이내, 단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3) 지원

국내 사역자 지원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
단, 연금 수령자는 기준액의 30%, 미 수령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한다.

(단위: 천원)

구분	독신		가정(부부)		가정 (자녀1)		가정 (자녀2)		가정 (자녀3 이상)	
지원	100%	30%	100%	30%	100%	30%	100%	30%	100%	30%
지원액	1,650	495	2,150	645	2,350	705	2,650	795	2,850	855

※유관기관과 연계된 전임사역은 실제 지원금(교사선교회+유관기관)이 지원금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다.

센터 운영 원칙

제 1 장 총 최

제1조(목적)

본 운영 원칙은 별무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건물에 대한 명칭은 별무리센터(이하 '센터'라 칭한다)라 한다.

제3조(센터 소재지)

센터는 충청남도 남일면 별무리 1길 3 에 소재한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.

- 1. 교사선교회 고유 사역 수행
- 2. 별무리교회, 별무리마을, 별무리 학교 공동 사용
- 3. 타 단체 및 기관, 지역주민에게 대여

제 2 장 센터 운영 및 관리

제5조(운영자)

- 1. 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교사선교회 사무국 재정팀장이 맡는다.
- 2.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유급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센터 운영)

- 1.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을 위하여 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.
- 2. 센터운영협의회는 교사선교회 사무국 재정팀장이 주관한다.
- 3. 센터운영협의회 구성은 교사선교회, 별무리교회, 별무리마을, 별무리학교 대표자로 하다.
- 4. 센터운영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.

제7조(센터 사용 원칙)

- 1. 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2주일 전에 사무국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(교사선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온라인 신청 원칙: 창구의 일원화).
- 2. 각 사용 주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 - * 주중(학기중 월요일~금요일 20:00)에는 학교 중심, 주말(금요일 20:00~토요일)에는 선교회 중심, 주일에는 교회 중심, 주중(월요일~금요일 20:00~22:00)에는 마을 중심으로 활용하다.
- 3.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
제8조(시설 사용료 부과)

1. 센터 제반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센터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에 따른다.

제9조(시설 관리)

- 1. 전기 안전 관리지를 선임하여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(금강전기와 계약).
- 2. 청소 및 정리는 사용한 주체가 책임진다.
- 3. 센터 이용 시 발생한 하자는 사용 주체가 원래대로 복구한다.

제10조(수입지출 보고)

1. 센터운영팀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교사선교회 정간사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사용료) 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와 관련 된 사항은 별도 요율에 따른다.

제 3조(게스트하우스 운영) '별무리 게스트하우스'는 별무리센터의 부속 시설로써 별도의 운영 원칙과 사용료에 관한 요율을 정하여 운영한다.